#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53 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 : 임종득 • 유용원 • 김기웅

서천호 • 권영진 • 이헌승

이인선 · 성일종 · 한기호

강선영 · 김형동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·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, 중소·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.

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·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

화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)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제14조의2(방위산업기술보호 전 문인력 고용지원 등) 방위사업 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 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 용한 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 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 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 정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
	지원을 할 수 있다.